

연구보고 2004-

채권추심관련 법제개선방안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Debt Collection

연구자: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04

국 문 요 약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채권정리와 회수가 급증하고, 개인의 신용불량 및 연체가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한 채권자 및 채권회수전문기관 등의 부당·위법한 행위가 함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적 책임재산 은닉 내지 처분과 함께 채권자의 부당한 책임재산 보충 내지 확충의 요구나 합의에 의한 책임의 확대 및 신설도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채무자 및 인적·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상사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민사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양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이행을 구하게 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변제와 강제집행의 중간영역에서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추심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성 및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의 확대나 금전채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탈법적·위법적 추심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로 이행지체 이후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채권추심행위의 실태 및 유형 조사 분석, 채권추심자의 부당행위와 관련 법제 분석 및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 키워드 : 채권추심행위, 책임재산, 추심위임, 무자력

Abstract

Due to the recent business depression and corporate re-organizations, the adjustments and collections of loans have increased and individuals' credits have deteriorated. Under the circumstances, social problems such as creditors and collection companies' wrongful and unlawful conducts has risen.

Along with a debtor's malicious concealment or disposition of his property, the increase of his responsibility resulting from a creditor's wrongful demands on additional collateral should be prohibited. The former should be prohibited for the protection of a creditor while the latter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a debtor.

Currently, the Korea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stipulates provisions regarding the collections of commercial loans and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provisions regarding the collections of non-commercial loans. However, forceful collection of both loans can be executed under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nd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lternatives of legal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llection of loans in the area between voluntary repayment and forceful execution such as the fairness between a creditor and a debtor, the wrongful increase of a debtor's responsibility, and the prohibition of wrongful and unlawful collections. This paper will review

current collection systems and procedures and their related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collection of bot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loans.

※ Key Words : Debt Collection Practices, collateral, delegation of collection, insolvency

목 차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2 장 채권추심의 현황과 문제점	15
제 1 절 채권추심제도의 현황	15
1. 채권추심의 유형	15
2. 책임재산의 파악과 확보 수단	17
3. 절차별 추심행위 유형	25
제 2 절 연체 이후의 추심절차와 문제점	33
1. 채권추심위임계약	33
2. 추심위임계약에 의한 추심절차	34
3. 연체된 이후의 추심진행 절차	36
제 3 절 관련법제	37
1. 현행 채권추심 관련법	38
2. 외국의 관련법제	43
제 3 장 채권 회수제도의 문제점	49
제 1 절 채무자의 신용조사 부문	49
1. 채무자의 변제자력	49
2. 담보대출의 관행	54
3. 채무자의 신용 정보 조사 관련 규정	55
제 2 절 책임재산 보전부문	59
1. 가압류·압류	59

2. 채무자의 담보상실·감소등과 기한의 이익	59
3. 채권자대위	60
4. 채권자취소권	63
제 4 장 불법 채권추심의 규제	65
제 1 절 관련법제	65
1. 신용정보법	65
2. 대부업법	65
3. 여신전문금융업법	65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66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66
제 2 절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유형	66
1. 신용정보업상 불법채권추심행위	66
2. 신용정보업자의 금지행위	68
3. 대부업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69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69
5. 은행업 감독규정상 부당 채권회수·관리행위	70
제 3 절 채권추심 당사자	71
1. 채권추심 위임계약 당사자	71
2. 채권추심인과 추심대상	75
제 4 절 외국의 입법례	77
1. 미 국	77
2. 일 본	84
3. 영 국	88
제 5 절 문제점	90
1. 계약 체결단계	90
2. 이행기 이전	92

3. 이행기 이후 단계	95
4. 강제이행 단계	96
제 5 장 법제 개선방안	99
제 1 절 개선방향	99
1. 민사채권의 추심 부문	99
2. 상사채권의 추심 부문	100
제 2 절 관련법제 개선방안	100
1. 신용정보업법	100
2. 민사집행법 관련	104
3. 대부법 관련	106
참 고 문 헌	107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채권정리와 회수 급증, 개인의 신용불량 및 연체 폭증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채권을 보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 및 채권회수전문기관 등의 부당·위법한 행위가 함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개인 및 법인의 자기채권 직접추심행위와 관련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추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대적 대륙법에 있어서의 채권의 법적 보장과 직결된다.¹⁾

근대적 대륙법에 있어서의 채권의 법적 보장 즉, 국가적 강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1차적으로는 급여의무의 강제적 실현, 제2차적으로는 불이행의 代償으로서의 배상의무에 의하는 보장이다.²⁾

독일의 이론 가운데에는 불이행급여의 代償으로서의 책임규정에 입각하여 임의적인 이행이 없는 경우의 강제라는 공통된 관점에서 배상의무나 보증의무까지도 책임의 개념 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입장으로서의 강제집행도 급여의무의 실현으로서가 아니라 배상급여(Ersatzleistung)으로서 구성되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강제적 계기를 널리 책임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채무는 곧 『채무 + 책임』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독일의 이론 중에는 이러한 채권자의 공취력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이행에 대한 『법질서의 반작용』을 책임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의 속성을 구성하는 소구가능성을 포함하는 강제적 계기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공취력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지배가능성은 오직 집행에 있어서 가능하고 집행에 있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취력에 따르는 상태를 기술적 의미에 있어서의 책임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1) 김용한, 재산법의 과제와 판례, 박영사, 1989, p.160.

2) 영미법에서는 배상의무에 의하는 sanction을 원칙으로 한다: Rheinstejn, Struktur vertraglichen Schuldverhältnisses, S.126.

이와 같이 볼 때 강제집행이 그러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형식 일 것은 명백하지만, 상계가능성도 역시 그러한 공취력의 나타남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상계는 한편에 있어서는 변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 외의 공취로서 책임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와 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급여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는 강제적 계기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지배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은 ‘급여의무’의 내용 속으로 완전히 흡수될 수 없는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물적 유한책임 또는 합의에 의하는 책임의 제한 내지 배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채무와 책임과의 개념적 대립을 전제로 하고 책임만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론구성이 될 것이다.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불법적으로 또는 탈법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물적 유한책임의 확대나 합의에 의하는 책임의 확대나 신설과 같은 『채무와 책임』의 병리적 적용 내지 실현이다.

아울러 채권추심행위의 전제가 되는 채무 자체에 있어서도, 자연채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자연채무를 책임있는 채무로 전환시키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적 책임재산 은닉 내지 처분과 함께 채권자의 부당한 책임재산 보충 내지 확충의 요구나 합의에 의한 책임의 확대 및 신설도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채무자 및 인적·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채권채무관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무이행의 강제나 채무이행의 회피로 변질되는 것은 합리적인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방지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상사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민사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양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는 민

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이행을 구하게 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변제와 강제집행의 중간영역에서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추심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성 및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의 확대나 금전채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탈법적·위법적 추심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단계는 그 합법성과 타당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변제기 또는 상당한 연체기간 내의 임의변제의 경우도 당사자의 사적사치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주로 이행지체 이후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접 채권추심행위의 실태 및 유형 조사 분석, 채권추심자의 부당행위와 관련 법제 분석 및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국내외 관련 판례 및 법이론 연구, 실태 및 유형 조사 및 입법정책적 연구 방법론을 병행하여 개선방안에 이르고자 한다.

제 2 장 채권추심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채권추심제도의 현황

1. 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추심은 그 개념상 채권의 성립 이후부터 최종적인 변제나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에 이르는 전체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로 보면 『이행기가 지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제반 행위』를 채권추심행위라 할 수 있다. 광의로 보면 『채권의 효과적 보전 및 회수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

현재 영업적 채권추심서비스는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자로부터 상거래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임받아 채무자의 소재파악,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독촉, 법적조치 컨설팅,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부실채권의 회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용정보업자가 추심을 대행하는 위임 대상채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추심대상 채권으로서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다.

제도권 금융을 제외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나, 사인간의 금전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채권은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다.

채권추심은 신용평가,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순서로 이어지는 전체로서는 자산관리의 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가 필수적 요소로 조사·수집되어 활용된다. 또한 법령에 의한 채권추심은 이들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위임사무처리 결과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임의변제나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종료한다고 볼 수가 있다. 신용평가 등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바, 이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증산 등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시 등에 사용되는 인증서와 병용된다.

3) 김성천, 채권추심행위와 법제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p.6.

(1) 채권추심과 강제이행

금전소비대차를 비롯한 각종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채무는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이행지체후 변제 및 강제이행으로 종결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행지체후 변제와 관련된 탈법적 이행강제이다. 자발적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사결정력을 제한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비록 공권력에 의한 채권만족이라는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행지체후 변제는 자발적 변제와 비자발적 변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비자발적 변제는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의 생존적 재산 처분은 물론 추가적인 채무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채권추심과 강제이행은 그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하고, 채권자 및 법원측에 알려지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비협조 내지 은닉행위 등과 긴장 관계에 있게 된다.

책임재산의 변동은 채무자의 변제불능 또는 이행거절을 초래하거나 파산으로 인한 집행불능으로 변화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공격적으로 또는 지나친 심리강제수단을 동원한 이행강제를 초래할 여지가 발생한다.

채권추심행위 자체는 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행위이다.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충을 탈법적·위법적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강제하거나 제3자에 의한 채무인수 내지 대위변제를 강제하는 데에 있다.

현행 계약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은 채무명의의 확정과 책임재산의 확보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침해에 대한 공격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과 현존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만을 예정하고 있다.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을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하거나 인

적·물적 담보제도가 채권만족을 위한 계약법상의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전제되거나 예상된 기초적 사실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수인하는 사적자치의 틀 속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 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재산의 보충을 강제하거나 제3자에 의한 채무인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은닉되었거나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책임재산을 찾기 위한 탈법적·위법적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 악화된 경제상태로 인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 내지 채무자 파산상태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탈법적·위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체율 감축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 활동(추심)이 활발한 가운데 특히 카드사들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추심으로 적지 않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2. 책임재산의 파악과 확보 수단

(1) 책임재산

1) 원 칙

금전채무는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재산으로 된다.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이른바 파산의 형태로 정리 종결된다. 파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무이행절차와는 달리 파산법에 의하여 청산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는 채무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

4)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회사별 채권 추심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03년도 중 10월말까지 LG카드는 1천360건의 민원이 제기돼 전체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삼성카드(1천10건), 국민카드(725건), 우리카드(397건), 외환카드(212건)가 차례로 그 뒤를 이어 카드사들이 1~5위를 독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카드(147건) 9위, BC카드(66건) 12위, 롯데카드(51건) 14위, 신한카드(41건) 16위 등 전업 카드사가 모두 상위 20위권에 들어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카드사 이외에 삼성캐피탈(183건) 6위, 현대캐피탈(162건) 8위, LG할부금융(52건) 13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34건) 17위, 푸른상호저축은행(32건) 19위 등으로 집계돼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의 부당 채권 추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 강제이행과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외에 채권에 복종하는 책임재산으로는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의 일반재산과 물상보증인인 제3자의 특정재산 즉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가진 경우에 그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이 있다.

가. 채무자의 일반재산

채무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및 재산권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급여청구권도 포함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위한 압류가 신청되기 마련인 바, 압류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유형을 살펴보면 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 부동산 또는 선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⁵⁾

나. 보증인의 일반재산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의 일반재산은 주채무자의 채무와 연계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책임재산으로 소구된다. 책임재산으로 되는 재산의 범위는 채무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다. 물상보증인의 담보재산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을 승낙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게 되는 담보물이 이에 해당한다. 질권이 설정된 동산 및 채권 기타 재산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제한이 없으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331조). 질권설정이 금지된 등기된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

5)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계 등은 저당권의 설정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단순히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다.⁶⁾ 압류·가압류된 물건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 기타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⁷⁾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는 인도된 물건 및 그 과실의 전부에 미친다. 또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미친다. 다만,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42조).

저당권의 경우에는 토지·건물인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물권인 재산권, 상법상 등기된 선박(상법 제871조), 입목에관한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시된 입목, 특별법상 물권으로서의 광업권·어업권, 특별법상 공장재단·광업재단 및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만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책임재산으로 된다. 물적 유한책임으로 되는 것이며, 물상보증인의 일반재산은 피담보채권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

2) 예 외

가. 압류금지재산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 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민사소송법 561·584·603·609·611·668조 참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531조), 부동산에서는 중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p.406.

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0, p.738.

나. 선순위담보권자의 담보물

채권에 대하여 물권이 우선한다는 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일반재산이더라도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없으며, 특히 선순위의 담보물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만족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채권 충당이 가능하다.

다. 신탁재산

판례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⁸⁾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신탁기간 중에 과세되는 세금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과 같이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있고, 법인세(소득세)와 같이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 조세는 모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신탁재산이라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능이다(신탁법 제8조).⁹⁾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와는 상계가 금지되며(신탁법 제20조), 신탁재산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신탁재산의 취득자로서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취득하면 외관상 동일한 사람의 명의로 되나, 신탁법은 민법상 혼동

8) 대판, 1996.10.15, 96다17424; 1993.4.27, 92누8163; 1987.5.12, 86다545.

9)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1, p.85.

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신탁법 제23조).

(2) 책임재산의 조사

1) 책임재산의 보전절차 관련

책임재산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협조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부담 내지 위험으로 귀결된다.

책임재산에 대한 악의적 감소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의하여 채무자는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다. 책임재산의 조사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강제이행의 선행단계로서 필요하다.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에 가압류 대상의 특징을 위하여 책임재산의 조사가 의미를 가진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분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이므로 책임재산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

2) 재산목록 제출명령 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야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몫이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¹⁰⁾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즉,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10)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돈을 받아내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는 모두 793명으로 작년 동기 637명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제주일보, 2004. 8.16자 사설.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 68조제1항).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한다.

그러나 재산명시신청은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재산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이 정한 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 i)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ii)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 iii)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기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4항).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

법 제67조).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직 채무이행 지체 상태에 있거나 이행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의 채권자는 먼저 채무명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절차적,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아울러 감치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아직 채무불이행죄가 형사벌로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금전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맺은 채권자에 한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며, 음성적, 탈법적 금전소비대차 등의 경우에는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신용정보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이를 토대로 다시 탈법적,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3) 책임재산의 확보

책임재산의 확보는 집행보전절차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의 하나로서 압류가 있다.

1) 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인 급부소송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절차적 수단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소송법 707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69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받는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70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가압류·가처분의 종류는 주로 그 대상물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제525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2) 압 류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527~529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55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566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603·678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668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579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561·584·603·609·611·668조 참조).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平等配當主義),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優先配當主義)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531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3. 절차별 추심행위 유형

채권추심은 채무상환 독촉 및 법적 조치의 진행 등을 의미하는 바, 최종적으로는 채권액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제한의 정도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 통상적 추심행위는 채권자에 의한 채무의 일부면제가 이루어지나,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신용회복절차에서는 공적 기관 내지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통상적 추심행위

이는 채권자가 통상의 금전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채무자의 협조 또는 채권자의 자력으로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통하여 채권을 충당하거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이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다시 채권자 자신에 의한 추심행위와 채권의 추심위임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추심행위로 추심활동자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사회적·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후자의 추심위임 경우이다.

채권추심위임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대 개인간의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탈법적 추심계약이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추심행위

최근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2004.3.2.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3.22. 법률 제7198호로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2004.9.23.)로부터 시행된다.¹¹⁾¹²⁾

그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의 단기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 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가능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0조).
- 다. 법원은 회생위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11) 법안의 제정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3년 6월 9일 조배숙의원 외 1인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 같은 날 서상섭의원이 소개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3년 11월 5일 천정배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각각 제240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3.6.23)와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3.12.17)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4.2.27)및 제3차(2004.3.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2004.3.2)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12) 2003년 6월 9일 조배숙의원 외 1인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 2003년 11월 5일 천정배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은 2003년 2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중 개인회생절차편만을 분리하여 개인회생제도 만이라도 독자 입법으로 조속히 제정·시행하려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만의 특색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대안이 제시되어 통과된 것임.

- 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관리의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을 갖도록 함(안 제24조).
- 마.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10억 원 이하의 담보채무자, 5억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 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 사.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도록 함(안 제63조 내지 제65조).
- 자.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1조).
- 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83조 및 제84조).
- 카.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87조).

개인회생절차 이용대상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며 총 채무 15억원 이하(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하)인 자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한도 금액은 최대 3억원 채무까지 가능한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 최대 5배가 많은 액수다. 특히 금융기관과 사채를 포함해 3억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샐러리맨,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업군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기존 파산제도와 달리 이들 전문직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도 자격(면허)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3억원 이상 고액채무자 통계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으나 지난해 말 현재 신용불량자 중 1억원 이상 채무자 비율은 5.2%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략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이니 비율을 2% 정도 잡으면 7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 8년이며 변제에 앞서 법원은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 즉 가용소득을 정하게 된다. 이때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최소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책 결정 뒤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송달료, 채권자수 x 3회분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개인도산의 경우 파산 등 청산형 절차만 존재했으나 개인회생제 도입으로 재건형 절차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자도 파산선고 보다 이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3)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의 추심행위

워크아웃 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란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¹³⁾를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말한다.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총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100 이상인 경우
-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황에 전액사용된 대출은 제외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13)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6인 가족: 1,307,904원
- 5인 가족: 1,159,070원
- 4인 가족: 1,019,411원
- 3인 가족: 810,431원
- 2인 가족: 589,219원
- 1인 독립세대: 355,774원

제 2 장 채권추심의 현황과 문제점

-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이미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40/100 이상인 경우
 -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액
 -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미만인 경우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 비교 >

구 분	금융감독기구시행			법원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복지원	bad bank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시행 시기	2003.3	2004.5.20 부터 한시적	2002.10.1	2004.9.23	1962.1.20
채무 범위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만원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4) 대부업 관련 추심행위

1) 사전적 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과잉대부의 금지(동법 제7조)와 이자율의 제한(동법 제8조)을 통하여 신용불량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즉,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자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보고 있다(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이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한 변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

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인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의 발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동법 제11조).

2)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다음 각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5) 증권업 감독규정상 임의상환정리와 임의상환방법

증권업감독규정은 임의상환정리와 임의상환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5조~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충당하여야 한다(동규정 제5조~12조 제1항). 그리고 증권회사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이자·위탁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신용거래자가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또는 담보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신용거래자의 신용거래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동규정 제5~13조 제1항).

제 2 절 연체 이후의 추심절차와 문제점

1. 채권추심위임계약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조사, 변제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추심위임계약은 그 대상채권이 '상법상의 상행위(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에 한하고 있다(신용정보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

추심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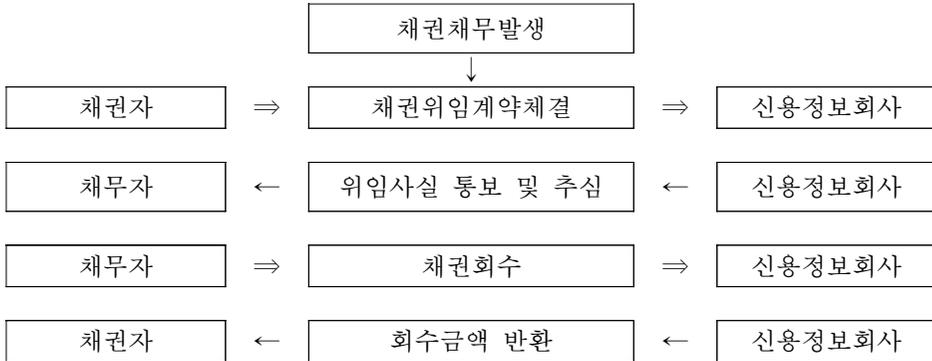
- i)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ii) 채권 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 소재 파악 조사
- iii) 채무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iv) 기타 채권회수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신용정보회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영역을 채권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고액 채권	1. 개인사업자, 개인기업, 중소기업 등이 의뢰한 부실채권 회수대행
	2. 대기업, 금융기관 및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부실채권 회수대행
	3. 상기업무 업체별 전문팀 구성, 대손상각 업무 및 채권관리 아웃소싱
소액 채권	1. 신용카드, 통신요금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연체내역 통지 및 채무변제 촉구
	2. 백화점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및 채권관리 아웃소싱

2. 추심위임계약에 의한 추심절차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맺은 경우, 그 추심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의 절차 중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은 추심 및 채권회수 과정이다.

추심을 위한 전화나 방문, 이를 위한 불법조회, 각종 협박 등이 채권추심을 위한 불법 내지 탈법행위로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불법조회는 전화번호 조회, 휴대폰번호 조회, 의료보험가입여부 및 회사조회,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회사조회 등이 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 수집·조사의 제한(제15조)

①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蒐集·調査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國家의 安保 및 機密에 관한 情報
2. 企業의 營業秘密 또는 獨創的인 研究開發情報
3. 개인의 政治的 思想, 宗教的 信念 기타 信用情報과 무관한 私生活에 관한 情報
4. 不確實한 個人信用情報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蒐集이 금지된 情報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

②信用情報業者등이 개인의 疾病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고자 할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目的에 한하여 당해 情報를 이용하여야 한다.

ii) 蒐集·調査 및 처리의 委託(제16조)

①信用情報業者등은 그의 業務範圍안에서 依頼人의 同意를 얻어 다른 信用情報業者등에게 信用情報의 蒐集·調査를 委託할 수 있다.

②信用情報業者등은 蒐集된 信用情報의 처리를 他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受託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者이어야 하며 受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第19條 내지 第21條·第26條·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各條에 대한 罰則規定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iii) 信用情報業者등의 금지사항(제26조)

信用情報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信用情報業者외의 者는 第5號 本文의 행위를 業으로 하거나 第6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을 依頼人에게 알리는 일
2. 信用情報에 관한 調査依頼를 强要하는 일
3. 信用情報에 관한 調査對象者에게 調査資料의 제공과 답변을 强要하는 일
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料·照會料·債權推尋料 또는 手數料등의 最高限度보다 많은 金品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 特定人의 所在를 探知하거나 金融去來등 商去來關係외의 私生活등을 調査하는 일. 다만, 債權推尋業務를 許可받은 信用情報業者가 同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特定人의 所在를 探知하는 경우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人의 所在探知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情報員·探偵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債權推尋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 가.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하거나 偽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는 방법
 -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有價證券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3. 연체된 이후의 추심진행 절차

다음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등의 추심실무 관행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단계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위임을 한 경우로서,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사원은 급여전액이 수당제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추심 내지 편법·탈법 내지 불법 추심이 일어날 여지가 적지 않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인이 필요하며, 대환이자가 통상 24%에서 대환연체이자가 28% 정도 된다는 점에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담당 기관	절 차	처 리 내 용	실 무 조 직
채권사(금융기관)	자체 관리	대환대출, 현금회수	단기반
↓			
신용정보회사	추심위임	대환대출, 무보증거치, 현금회수	중기반(1단계) 추적(방문)
		법적 처리(본안소송, 각종가압류, 대손처리 등)	중기반(2단계)
		(상 동)	대손반
↓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채권매각	채권매각, 회수	

* 대환대출: 『원금 + 연체이자 + 대출이자』를 원금으로 일정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거치론: 『현금 + 연체이자 + 대출이자』를 원금으로 하여 1년간 이자상환, 이후 약정기간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현금회수: 일부 감면, 나머지는 일시불 상환(통상, 중기에서는 이자만 감면, 대손단계에서는 원금의 10% 정도 감면)
- * 자산관리공사의 채권관리 및 유입자산매각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 및 무담보채권을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인수하거나 회수위임 받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
 - 특히 인수한 무담보채권의 경우 성과급 직원을 채용하여 채무관계인의 은닉재산이나 소득원 등 재산을 확인하여 법적 조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
한편 채무관계인이 자진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담보채권에는 채무조정을,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채무감면을 적용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채권)관리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방지의무 및 정리의무(동법 제3조) :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不實債權 및 非業務用資産(이하 “不實資産”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提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不實資産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에 不實資産의 정리(債權의 回收·推尋 또는 財産의 賣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委託하거나 그 引受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 3 절 관련법제

우리나라의 채권추심행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제를 근간으로 소비자신용법제와 특수판매법제에서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에서 불법채권추심행

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추심행위 일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아울러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되는 각종 금지되는 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법제와 마찬가지로 채권회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그 영업의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위반시에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되는 각종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현행 채권추심 관련법

(1) 채권추심행위 일반

1) 민 법

민법은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청구적 효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을 그 기본적 효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채무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인 『채무의 이행』이란 관점과 채무의 이행으로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채무의 변제』라는 관점에서 채권의 행사와 만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발동으로 채무내용의 실현이 강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⁴⁾ 이행판결과 강제집행을 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실현 즉 채권추심의 최종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민법은 이행지체 이후의 구체적인 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행지체 이전의 경우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고, 각종 담보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

14)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p.90~91.

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행위 일반과 관련하여서는 영업의 허가요건, 영업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조사와 신용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신용정보법이 비록 채권추심행위의 정의 규정을 두어 「채권추심업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법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 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행사방법과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라는 소극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신용정보법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행정제재, 형사처벌, 분쟁조정 등 채권추심 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은행법 기타 금융관련 개별법

은행법, 보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개별법에서는 채권추심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증권업감독규정은 임의상환정리와 임의상환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5~13조의 규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동규정 제5~12 제1항). 그리고 증권회사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이자·위탁매매 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용거래자가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또는 담보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신용거래자의 신용거래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동규정 제5~13조 제1항).

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해제권제한(제8조), 기한이익상실사유(제10조), 매수인의 항변권(제12조) 등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의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불법채권추심행위

1) 민 법

민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불법행위책임 등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있다.

채무자의 채무의 불이행시 채권자 등 채권추심인으로부터 폭행·협박·위계나 위력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요받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 등이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요할 경우 신용정보법 제26조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신용정보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채권자 등은 채무자 등은 채무자 등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원은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판시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제10조,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한 제12조 등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제1항),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런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만일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지정·고시가 제정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6조 제4항 및 제53조의2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2조 제1항), 소비자와 사업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내용 중 하나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채권추심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3)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26조제7호),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인 채권을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 채권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4) 대부업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10조), 행정제재, 형사처벌, 분쟁조정 등 채권추심 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채권추심행위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이용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동법 제24조),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이들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채권추심시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24조의8 제1항).

6) 은행법 기타 금융관련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업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일부 관련업자의 채권추심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자 등의 금지행위규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23조, 제32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규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2. 외국의 관련법제

외국의 채권추심행위법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무 회수행위규제의 한 내용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거나 개별 사업 법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미 국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법으로 공정채무회수행위법이 있지만, 동법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각 주법에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여 오고 있다.

1) 공정채무회수행위법

공정채무회수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은 1986년 7월에 성립된 연방법으로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소관한다. 기본적으로 회수위탁을 받은 채무회수업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일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각종의 행위는 주법에서 규제하였다. 이 법의 성립으로 연방과 주 쌍방에서 규제한다.

공정채무회수행위법은 소비자신용보호법 제8편을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목적(제802조), 정의(제803조), 소재지 정보의 취득(제804조), 채무회수와 관련된 연락(제805조), 해약 또는 권한 남용(제806조), 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제807조), 불공정한 관행(제808조), 채무의 유효성(제809조), 다수의 채무(제810조), 채무회수업자의 소송(제811조), 기만적인 서식제공(제812조), 민사책임(제813조), 시행조치(제814조), 위원회의 의회보고(제815조), 주법과의 관계(제816조), 주법의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제817조), 발효일(제818조)로 되어 있다.

2) 집단폭력 및 부패조직법

집단폭력및부패조직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은 1970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동법은 민사적 제재와는 거의 무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동법 제1964조(c)에 근거하여 동법의 위반으로 영업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소송비용, 변호사 수입료 등을 포함한 실제 손해에 대한 3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이후에도 가끔 민사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동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으며, 변호사 등은 그에 대한 근거로 보통법상의 사기, 제조물의 결함, 형사범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제시하며 민사책임을 추궁하였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마피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폭력, 협박 및 강박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의 추진을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형사범죄와 더불어 민사적 책임,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3) 주 법

미국 각주는 연방법 제정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했다. 대표적으로 주의 채권추심행위 규제법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채무회수관련 법령 및 규정들

주 채무회수 법령(State Debt Collection Statutes and Regulations)은 채무회수의 권한남용에 대한 소비자의 근본적인 구체책을 규정하고 있다.

15) 김성천, 전계서, p.88~89.

주의 채무회수법령의 보호범위를 살펴보면, ①개인의 사생활보호, ②권한남용의 회수행위의 금지, ③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채무회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¹⁶⁾

나. 불공정 및 기만행위의 관행의 금지에 관한 소비자법령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가 사기적 매매행위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령을 소 FTC법,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s) 내지 불공정하고 사기적 행위에 대한 법령인 불공정 및 기만행위와 관행의 금지에 관한 소비자법령(General State Consumer Protection Statutes Prohibiting Unfair and Deceptive Acts and Practices : UDAP)이라고 한다. 동 법령의 목적은 채무추심행위시 불공정하고 사직적인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다.

(2) 일 본

일본은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¹⁷⁾

1)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률은 특정금전채권의 처리가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의 특례로 채권회수회사가 업으로 특정금전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회수회사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8년 법률 제126호로 제정되었으며, 크게 6개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허가 등(제3조~제10조), 제3장 업무(제11조~제19조), 제4장 감독(제20조~제25조), 제5장 잡칙(제26조~제32조), 제6장 벌칙(제33조~제37조) 및 부칙을 구성되어 있다.

16) 상계서, p.91~94.

17) 이밖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통일소비자신용법요강안(2003.8.21)이 있다.

2)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으로 운영되던 사채업을 금융업의 한 분야로 인정한 법으로 대금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함과 동시에, 대금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의 적정한 활동을 촉진함에 의해,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한편 자금수요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규정으로 증명서의 휴대의무(제13조의2), 폭력단원 등의 사용 금지(제13조의3), 추심행위의 규제(제21조제1항), 명시 의무(제21조제2항), 제재(제49조 등) 등이 있다.

(3) 영 국

영국은 소비자신용법, 공정거래청의 채무회수에 관한 가이드라인(Debt Collection Guidance) 등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 소비자신용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은 기존의 할부판매법, 대금업법, 전당업법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개인신용관련 법률을 통폐합한 소비자신용관련 기본법률로서 할부판매 등 소비자신용사업의 인가, 계약내용의 공시, 광고 및 외관행위의 규제, 소비자의 계약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불이행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개인비밀 정보보호를 위한 소비자신용정보업무의 규제 및 거래행위에 대한 사법부직권의 통제 등 소비자신용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은 채무회수행위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과 채무회수상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불이익은 계약내용의 규제를 통하여 방지하고 있으며, 체결된 계약내용이 동법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항과 모순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고 있다(동법 제4장에서 제7장까지).

또한 동법 제10장에서 부수적 신용제공사업의 한 형태로 채무정산업, 채무상환상담업, 채무회수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공정거래청의 채무회수 가이드라인

『채무회수 가이드라인』(Debt Collection Guidance)의 목적은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 ; OFT)이 판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분류하여 파악함으로써 만약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OFT로 하여금 보다 신속한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그 적용대상은 모든 소비자 신용인가증(credit licence) 소지자와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통상적인 상환추심과는 무관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default)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회수에 대하여 적용된다.

(4) 호주 등

호주에서는 채무회수행위와 관련한 연방입법(Federal legislation)으로는 1974년 거래행위법(The Trade Practices Act of 1974)만이 존재한다. 동법은 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¹⁸⁾ 물리적인 힘(physical force), 부당한 괴롭힘(undue harassment), 협박(coercion)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60조).

캐나다에서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주의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¹⁹⁾ 알베르타(Alberta)주에서는 1965년 초기 채무회수행위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제13조와 제14조에서 법의 관련기관(administrator)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회수기관, 채권자나 기타 대리인의 오해를 초래케 하는 추심 서면의 이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회수기관과 회수자의 고객 사이의 관계의 규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78년 회수행위법(the Collection Practices Act of 1978)으로 개칭되고, 1980년 일부 개정되었다.

18) 여기에서 소비자란 단지 소비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19) 연방법으로는 1976년 『채무자와 예탁자 보호법(A Borrowers and Depositors Protection Act in 1976)』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5) 외국 관련법체계의 특징

외국의 채권추심행위규제의 법체계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제와 개별사업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채무회수행위의 공정화라는 차원에서 채권회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채권관리회수회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채무회수행위에 관하여 적정한 채권회수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면, 아울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법제에 좋은 참고입법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도 영미법계의 관련법령은 그 특성상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로 구체적인 내용의 비교 분석은 4장을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제 3 장 채권 회수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채무자의 신용조사 부문

1. 채무자의 변제자력

채무자의 변제자력은 책임재산과 장래의 예상수입이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관계되는 규정은 그리 많지는 않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민법 제404조)를 요구하고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민법 제406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민법 제437조)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의 무자력

1)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중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채권보전의 필요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 즉 『채무자의 無資力』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구법시대부터 판례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 오고 있으며²⁰⁾, 학설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²¹⁾ 그러나, 판례가 특정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위권의 행사를 인

20) 판례의 근거는, 민법규정(구민법 제423조)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채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대위권행사의 효과는 총채권자의 이익에 돌아간다는 규정(구민법 제426조, 현행민법 제407조)이 없고, 또한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다는 것을 들고 있다: 박윤직, 전거서, p.213.

21) 박윤직, 전거 채권총론, p.212.

정한 예는 두 경우 뿐이다. 하나는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전매된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임차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임대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대위행사하게 한 경우이다.

현행 민법에서의 판례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법시대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없이 특정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도 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범위를 현재의 판례는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측정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특정채권 즉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절차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 등이다.

반면에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손해배상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²²⁾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때 채무자가 무자력인지의 여부 즉,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유무를 인정할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²³⁾ 채무자의 무자력에 의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²⁴⁾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기 이전에는 비록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

22) 대판 1963.2.14 [62 다 884] : 대판 1963.4.25[63 다 12]: 대판 1972.4.28[72 다 187].

23) 대판 1972.11.28[72 다 1466].

24) 대판 1966.6.21[66 다 587].

아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즉 재판상 대위(제404조 제2항)와 보존행위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대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제405조 제2항).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통지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권리의 행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위한 소의 제기도 채권자의 통지가 있는 후 또는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후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²⁵⁾ 이 점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민법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채권자를 해한다』고 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²⁶⁾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케 하는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변제 및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등기나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대물변제도 상당한 대가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이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 것²⁷⁾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가격 또는 채권액

25) 대판 1962.5.24[4294 민상 251·252].

26) 대판 1962.1.16[62 다 634].

27) 부동산 기타 재산의 매각이 사해행위로 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각각 다르다. 적극재산을 無償 또는 부당한 염가로 감소케 하는 것이 사해행위로 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상당한 가격으로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

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²⁸⁾ 인적 담보의 부담은 연대채무는 전액 소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배제하지 못하나,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보증한 채무자가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고 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그것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가. 債務者資力の 算定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평가·포함해야 한다.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평가·가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위에 物上擔保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행사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한도에서 그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공제하고 동시에 그 한도에서 당해 담보재산도 이를 적극재산에서 공제해서 채무자의 자력의 유무를 산정하여야 한다.²⁹⁾

나. 자력산정의 시기

채무자가 여러 재산감소행위를 한 때에는, 각 행위에 관하여 그 당시에 그 행위로 무자력이 생겼느냐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은 각개의 사해행위의 당시에 그 행위로 무자력이 되어야 하

비·은닉 또는 散逸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공동담보의 효력을 削滅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우를 나누어 만일에 채무자가 대금을 유용하게 소비한 사실(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또는 세금·공과금의 지출 등)이 있으면 그 대가가 불상당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은 때에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유용한 소비의 입장은 청구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봄). 학설은 매매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대금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성립·불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또 채무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하여 부당하다고 부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8) 대판 1962.11.15[62 다 634]

29) 광윤직, 전계 채권총론, p.288.

나, 그 밖에도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때인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다. 취소소송의 상대방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즉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³⁰⁾,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못한다.³¹⁾

라.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이 계속하는 중에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당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受繼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마. 행사의 범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은 가산하지 못한다. 사해행위가 可分이면 원칙적으로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참가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손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³²⁾

3)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은 『채권액에 대하여 거래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額の 집행이 용이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거래관념상 상당한 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설 및 판례는 해석한다.

30) 대판 1965.9.7[65 다 1481].

31) 대판 1961.1.9[4293 민상 263], 대판 1962.1.25[4294 민상 529] 등.

32) 광윤직, 전계 채권총론, p.247.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을 위하여 현저한 시일과 비용을 요함이 없이 쉽게 그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에 있는 동산은 집행이 용이하나, 원격지에 있는 동산은 물론이고 기타 부동산·채권 등은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각 경우에 그 집행의 용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문제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책임재산의 보전 수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채무자의 변제자력 내지 무자력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에서 요건으로 필요한 무자력인지의 여부 즉,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유무를 인정할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의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권리이다. 유형재산 뿐만 아니라 채권과 채무를 모두 알고 있지 아니하면 무자력의 산정 내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을 판단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제도적 장치가 민사법에는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당사자의 사적 자치와 채권자의 개인적 노력 내지 능력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이 반드시 이행기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채권자회수와 관련하여 현저히 그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행을 낳지 않았나 추정된다.

2. 담보대출의 관행

현행 민법은 담보물권제도와 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할 필요가 적다. 특히 상사 금전소비대차인 금융권의 대출에서는 실무관행상 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대출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담보물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 수 채권회수 부족분을 고려하여 담보물의 일정비율로 대출액을 결정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 내지 신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행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현재의 재산정도나 예상수입을 알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대출 관행은 거의 담보대출이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에 문제된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나 IMF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채권의 문제는 이와는 다른 근거로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전자의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종전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된 소액 대출 내지 신용카드 대출의 경우에 발생하였고, 후자의 부실채권 문제는 유동성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와 금융권의 급격한 대출금 회수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이다.

신용정보업법의 제정 시행 이전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수집이 전적으로 채권자 개인의 독자적 개별적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거래실적의 확인과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통하여 현재 및 장래의 수입을 추정, 대출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아주 기초적인 신용정보의 확인에 그친 셈이다.³³⁾

3. 채무자의 신용 정보 조사 관련 규정

(1) 부동산 정보

담보대출을 예정한 법체계와 담보대출의 관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경로가 거의 마련되지 못하였다고도 할 수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33) 지금도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담당자의 판촉활동은 특별한 담보나 보증없이 일정한 액의 대출이 가능함을 광고하고 있다.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1조제1항). 이는 온라인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 다만, 부동산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등기소의 관할은 부동산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을 열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³⁴⁾

(2) 채무자의 주소(거소) 정보

계약체결 당시의 채무자 주소는 계약서 및 채무자의 신분증으로 일단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주소와 실제 생활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일정한 자에게로 제한되어 있다.

채무자의 주소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증명서류』의 제시가 필요하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채무자의 주소확인 은 채무자가 임차인(전세권자)이거나 건물의 소유주인 경우에 대항력 요건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관련하여 기재되거나 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향후 채무인수자를 구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주민등록)를 옮긴 경우에도 이의 확인이 가능하다.

(3) 채무자의 직장 내지 상시적 소득원 확인

채무자의 직장 또는 상시적 소득원의 확인은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건강보험증에 표시된다. 소득원은 근로소득세를 주된 근무

34) 최근 전자정부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 확충되어 대부분의 공부는 온라인으로 열람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열람서비스 및 원본(등본)서비스를 대행하여 주는 영업이 인터넷에는 상당히 많다. 이들 영업자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호적등본 등의 열람 및 배송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에서 부과·납부하기 때문에 관할 국세청 및 지방세담당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모두 본인을 제외하고는 열람이나 확인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누설하는 경우나 위법한 취득은 처벌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i)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ii)예외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된다.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i)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ii)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iii)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iv)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v)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vi)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vii)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viii)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동법 제10조).

또한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3항), 개인정보의 이용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0조제4항).

이상에서 본다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특히 소득·재산·납세 등에 관한 정보는 법령상 본인 이외에 자에게 제공이 되지 아니하며, 이를 확보하는 것은 법령위반으로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적 장부나 서류를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에서 획득되는 정보는 모두 불법으로 획득된 정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이는 결국 담보 내지 보증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채무자의 협조없이 확인하는 합법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거래와 관련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되고 있다(동법 제17조).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정보는 수집·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14조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4조)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³⁵⁾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제3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에 대하여도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그 밖에

35) 각호는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동법 제25조제1항) 및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 위탁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동조제 2항).

제 2 절 책임재산 보전부문

1. 가압류·압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하여 채무이행소송의 확정판결 이전에 실행이 가능한 제도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 즉 책임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 보전절차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정지 효력이 있으며, 이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집행한 가압류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2. 채무자의 담보상실·감소등과 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제388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므로 당사자가 그 밖의 상실사유를 자유로이 정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i)당사자의 약정 또는 ii)법률의 규정에 정하는 경우이다. 법률에서 담보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저당물의 보충」(제362조)과 「보증인의 조건」(제431조)

에 관한 규정이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증인을 채권자가 지명한 경우이면 보증인의 변제자력 및 보증인의 변경청구권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민법은 여전히, 저당물의 가액 감소나 보증인의 변제자력이 없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러한 상황의 변동에 대한 통지 내지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3. 채권자대위

채권자대위는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 즉 「채무자의 無資力」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이다.

채권회수와 관련되는 경우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채권자 대위이다.

(1)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

1) 요 건

이 경우는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³⁶⁾

채무자가 무자력인지의 여부 즉,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의 유무를 인정할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³⁷⁾

36) 대판, 1963.2.14, 62 다 884; 1963.4.25, 63 다 132; 1969.11.25, 69 다 1665; 1972.4. 28, 72 다 187 판결.

37) 대판 1972.11.28, 72 다 1466.

채무자의 무자력에 의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³⁸⁾

被保全債權은 널리 청구권을 의미하며,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채권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대위에 의하여 보전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보전될 수 있다. 또한 대위의 목적인 권리보다 이전에 성립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채권이 저당권 등의 특별담보로 보전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위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부적절한 채권행사와 채권자대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최고나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회수와 관련되는 사항은 권리의 행사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절하지만 채무자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채무자가 부이익한 대물변제를 하였거나, 소를 이미 제기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적당한 소송방법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위하지 못한다.³⁹⁾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불이익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수밖에 없다.

3) 이행기 이전의 채권자대위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는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지만, 채권보전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i) 재판상 대위: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

38) 대판 1966.6.21, 66 다 587.

39) 채무자의 소송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조참가에 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참가로 자기의 권리보전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박윤직, 전제 채권총론, p.220.

는 때'에 기한 전이라도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내지 87조).

- ii) 보존행위: 보존행위로서 시효중단, 보존등기, 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채권의 신고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채권의 이행기 이전이더라도 법원의 허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대위의 효과와 채권추심과의 관계

- i) 재판상의 대위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후 그 권리를 스스로 처분하지 못한다.
- ii) 재판외의 대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제1항·제2항). 즉, 통지를 받은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 i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의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직접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변제가 되지는 않으며, 대위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으려면, 다시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거나 또는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의 것이고 相計適狀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우선 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수는 있게 된다.
- iv) 채권추심절차상 채권자대위권의 실효성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채권자가 알고 있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무자력의 판단시점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며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 채무자의 부적절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채권추심의 한 방법으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와 관계가 없는 일반 민사채권·채무의 설정 및 유지에 있어서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도 채권추심 목적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 및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다.⁴⁰⁾ 이 점에서 불법·탈법적 신용정보조사·조회의 여지가 발생한다.

4. 채권자취소권

(1) 책임재산의 보전과 채권자취소권

원래 채무자의 총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도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의 제도로는 채권자취소권 이외에 파산법상의否認權 제도가 있으나, 파산절차가 대단히 신중하기 때문에 파산 외에서 신속히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채무자는 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 재산은닉행위를 하는 수가 많으므로 파산외에서의 부인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은 실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⁴¹⁾

(2) 채무자의 무자력과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

40)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상거래를 행하고 있거나 행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라야 일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

41) 광윤직, 전계 채권총론, p.230.

제 3 장 채권 회수제도의 문제점

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적극재산의 감소행위(처분행위)나 소극재산의 증가행위(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된다.

제 4 장 불법 채권추심의 규제

제 1 절 관련법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추심위임계약, 추심인,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 및 규제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으로는 신용정보업법, 대부업법,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이 있다. 일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으로는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기타 금융관련 법 등이 있다.

1.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채권추심업,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26조제7호),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인 채권을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2. 대부업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10조), 행정제재, 형사처벌, 분쟁조정 등 채권추심 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채권추심행위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이용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동법 제24조),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이들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채권추심시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24조의8 제1항).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자 등의 금지행위규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23조, 제32조).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규정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 2 절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유형

1. 신용정보업상 불법채권추심행위

(1)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제7호).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한다. 적용 행위자는 신용정보업자는 물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포함된다.

- i)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ii)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 iii)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iv) 그 밖의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2) 제재수단

신용정보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제재

첫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예를 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 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건전한 영업을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감독하고 그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자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2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해당 채권추심업무를 개선·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5항).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제8호).

2) 형사처벌

신용정보법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 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행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7호 나목 내지 라목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2조 제2항).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과한다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4조).

3) 손해배상책임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동법 제28조 제1항). 다만, 신용정보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2. 신용정보업자의 금지행위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업자등에 대하여 추심관련행위로서 아래와 같은 일정한 행위를 불법추심행위와는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 i)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 ii)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 iii)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 iv)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 v)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vii)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유가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3. 대부업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대부업법은 대부계약과 관련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이 유형은 신용정보업 제2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유형과 유사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추심행위는 불법으로 된다.

적용 대상자는 대부업자는 물론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여신금융기관, 더 나아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동법 제11조).

- i)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ii)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iii)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시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동규정 제24조의8 제1항),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규정 제24조의8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 i)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1호)
- ii)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제2호)
- iii)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제3호)
- iv)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제4호)
- v)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제5호)
- vi)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제6호)
- vii)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제7호)

5. 은행업 감독규정상 부당 채권회수·관리행위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기관 이용자 권익보호 및 사고예방(동 규정 제8장) 중 하나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규정에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88조 제2호).

이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채권회수·관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세칙 제64조).

- i)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 ii)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 iii)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iv)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 금전신탁 등에 대하여 예금증서 미교부 또는 보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

제 3 절 채권추심 당사자

1. 채권추심 위임계약 당사자

(1) 민사채권

채권의 추심은 직접 추심과 추심위임으로 구분한다면, 채권자 및 채권양수인, 대리인, 관리인은 전자에 해당하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의한 추심인 또는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수임인에 해당한다. 직접 추심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심위임의 경우에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될 것을 요한다. 다만, 채권 양수인의 경우 이행지체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의 양도는 채권추심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의 양도와 채권추심을 위한 양도와 구분이 필요하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채권추심위임계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일반 위임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임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아울러 채권추심행위의 법률적 성격과도 관계된다.

1) 추심목적의 채권양도와 양수인

이는 민사채권에 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신용정보업자등이 채권추심업의 대상 채권으로 일반 민사채권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 탈법행위로서 채권양도를 이용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채권의 평가액에서 추심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민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한 규정이 민법, 의료보험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상 부양청구권(민법 제979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공무원·군인 등의 연금 지급 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6조, 제35조) 등이 있다.⁴²⁾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제1항).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 못한다.⁴³⁾ 통지나 승낙에 대한 조건의 부여나 사전에 이러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바, 이는 당사자의 약정으로써 이행지체 이후에는 통지·승낙의 이익 포기를 특약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2) 채권추심위임계약 당사자

① 채권추심의 법적 성질

우선 채권추심행위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냐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임에 의할 뿐이다.

신용정보업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 채권추심행위는 위임에 의한 채권의 행사로서 그 내용은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의 수령’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채권보전절차 및 강제이행절차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소송에 관한 행위』가 포함되게 되며, 채권의 양도 매각 처분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 넓게 된다.

42) 일반적으로 양도나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수급권의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 및 국세 체납처분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및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43) 채권양도의 승낙에 대하여 채무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대판 1989.7.11, 88 다카 20866),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할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대판 1987.3.24, 86 다카 908).

‘재산조사’는 사실행위이며, ‘변제의 촉구’는 이행의 최고인 경우에는 준 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이행의 최고는 확정기한부채무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제1항)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⁴⁴⁾

불확정기한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지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즉,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게 된다.

판례는 최고에 의한 지체는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생긴다고 보고 있다.⁴⁵⁾ 이에 대하여 최고가 있는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확정기한부이므로 이행의 최고는 이행지체 효과 발생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임의변제의 촉구라는 의미밖에 없다. 불확정기한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만 변제의 촉구는 이행의 최고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며,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이후의 변제 촉구 행위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임의변제의 심리적 압박수단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확정기한부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촉구가 채무자에 대한 강요행위로 될 여지가 있게 되고, 채무자의 보호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데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변제에는 변제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변제수령자의 변제수령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추심이 완수된 경우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일의 완성’에 해당하므로 위임이 아니라 『도급』에 해당하게 된다.⁴⁶⁾

② 수입인의 자격

민법은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인의 자격에 관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호사법·변리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등에서 특정 업무의

44) 곽윤직, 전계 채권총론, p.122.

45) 대판 1972.8.22, 72 다 1066.

4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p.1378. 참조.

수입은 일정한 자격자에 한하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는 변호사법(제3조)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채권추심행위를 수입받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저촉이 되며, 이 점에서 신용정보업법에서 신용정보업으로 허가를 하여 채권추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상사 금전채권에 한정될 뿐,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신용정보업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가 「업무」로서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다. 따라서 민사채권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의하더라도」 ‘업무로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업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며,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하므로(신용정보업법 제24조제1항) 일반 민사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사의뢰하여 이용할 수 없다.

요약하면, 민사채권의 경우에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중 수입인은 신용정보업자는 제외되므로 법령상 합법적인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조사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신용정보업법이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동법 제1항제6호)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민사채권의 추심 수입인은 신용정보업자(추심업무는 제외)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상사채권

신용정보업법은 채권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상 채권을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이다(동법 제2조제6호).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의하여 직접 추심인으로 되며,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다.

대부업자는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이다(대부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여신금융기관인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대부채권의 추심 위임에 의한 경우는 신용정보업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신용정보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5호). 그러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만을 받게 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규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업법과 대부업법이 함께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추심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추심위임의 경우에는 양 법률이 적용된다.

2. 채권추심인과 추심대상

(1) 채권추심인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직접 추심하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의한 추심수임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직접 추심인은 채권자 본인, 채권자의 대리인 및 보조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 본인의 명의로 추심하며, 그 효과는 직접 채권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채권의 양수인도 채권자에 해당한다. 변제자대위에 의한 경우에는 임의변제자도 추심인에 해당하게 된다. 민법은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 즉,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82조제1항).⁴⁷⁾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위할 수 있지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변제자는 그 승낙 없이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 전자의 임의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변제와 동시에 있어야 하며,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을 거절할 수 없고, 또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⁴⁸⁾ 채권자의 승낙은 제3자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고 물상보증인 및 담보물의 제3취득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추심수입인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분된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업무’로 하는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을 위탁할 뿐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업무로 할 수 있다. 그밖의 자는 신용정보업법에 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업무로 할 수 없다.

상사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추심인이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된다(신용정보업법 제4조제1항).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i)신용보증기금, ii)기술신용보증기금, iii)신용보증재단, iv)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v)한국수출보험공사이다.

(2) 추심대상

직접적인 추심대상은 채무자이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자, 임의변제인도 추심 대상으로 된다.

현실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강요된 추심에 의하여 변제하는 임의변제인이다.

47) 김준호, 전게서, p.1065.

48) 상계서, p.1066.

민법은 임의변제인이 자의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거나 변제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점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역으로 채권자등의 추심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추심대상으로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규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제 4 절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공정채무회수행위법상의 불법채권회수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i)소재지의 정보취득의 규제, ii)채무회수와 관련된 연락의 규제, iii)해약 또는 권한남용의 규제, iv)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의 규제, v)불공정한 관행의 규제 등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⁹⁾

(1) 소재지 정보의 취득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존재 사실을 소비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취하여진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소재지 정보취득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제804조).

- i)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이 해당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연락하는 것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신의 회사명을 밝힐 수 있으며,

49) Hobbs, Robert J., Rair Debt Collection, 5th., 2004, p.131.

- ii) 소비자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밝혀서는 안되며,
- iii)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한번 이상 연락하여서는 안되며, 단지 처음 연락 시에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지만 추후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 iv) 엽서로 연락하여서는 안되며,
- v) 우편과 전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채권추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체의 언어, 기호가 나타나서는 안되며
- vi) 만약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제3자와 연락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만 변호사가 상당한 기간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채무회수와 관련된 연락

제805조는 i)소비자와의 통상적 연락, ii)제3당사자와의 연락, iii)연락의 중지⁵⁰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여기의 “소비자”에는 소비자의 배우자, 부모(소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포함됨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들에 대한 강박적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1) 소비자와의 통상적 연락

채무회수업자는 소비자의 채무회수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 동의 또는 해당관할 법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다음 상황의 경우에 회수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805 a).

- i) 비정상적인 시간이나 장소 또는 소비자에게 불편하다고 알려지거나 알려져야만 하는 시간이나 장소⁵⁰⁾
- ii)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채무회수업자가 알고 있고 또한 동 변호사의 성명 또는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갖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50) 시간이나 장소 등 상황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상적이거나 편한 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 시간으로 오전 8시 이후 및 오후 9시 이전을 적절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우. 다만, 변호사가 채권회수업자의 연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호사가 소비자와의 직접 연락을 동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 iii) 소비자의 고용장소. 이 경우 채무회수업자는 소비자의 고용주에게 그 연락접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제3당사자와의 연락

제80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채무회수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 동의나 해당 관할법원의 명시적 허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채무의 회수와 관련하여 채무회수업자는 소비자, 소비자의 변호사,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된 경우의 소비자보고기관, 신용업자, 신용업자의 변호사 또는 채무회수업자의 변호사 이외의 제3자와 연락할 수 없다(§805 a).

3) 연락의 중지

소비자가 서면으로 채무상환을 거절하거나 채무회수업자와의 향후 연락의 중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채무회수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회수업자는 그 채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소비자와 연락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 채무회수업자의 채권추심노력이 종료되었음을 소비자에게 통지한 경우
- ii) 적법한 근거가 있는 범위내에서 채무회수업자나 신용업자가 통상적으로 취하고 있는 구체적 조치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 iii) 채무회수업자나 신용업자가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3) 해악 또는 권한남용

채무회수업자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을 해악(harass), 강박(oppress) 또는 권한남용(abuse)하는 결과를 당연히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805 a). 구체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제 4 장 불법 채권추심의 규제

- i) 사람의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폭력이나 기타 범죄수단의 사용 또는 동 사용의 협박
- ii) 외설적이거나 비속한 언어 또는 청자나 독자를 오욕하는 결과를 당연히 초래하는 언어의 사용
- iii) 채무상환의 거절을 주장하는 소비자의 명단공개(다만 소비자 보고 기관이나 본법 제603조 (f)항 또는 제604조(3)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 iv) 채무의 상환을 강제하기 위한 채무의 매매에 대한 광고
- v) 전화번호에 따라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거나 통화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행위
- vi) 제80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송화자의 신분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전화통화 행위

(4) 허위 또는 오보된 표시(제807조)

채무회수업자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허위, 사기 또는 오보된 표시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일반적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807).

- i) 휘장, 제복 또는 팩시밀리의 사용을 포함하여 채무회수업자가 미합중국 또는 주와 보증, 연결 또는 협력의 관계에 있다는 허위표시 또는 암시
- ii) 채무의 내용, 금액, 법적 상태나 채무회수업자가 채권추심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부 및 보수에 대한 허위표시
- iii) 어떤 개인이 변호사이거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있다는 허위표시 또는 암시
- iv) 채무불이행이 구속이나 징역 또는 재산이나 임금에 대한 몰수, 압류 또는 경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허위표시 또는 암시(다만, 동 조치가 합법적이고 채무회수업자와 신용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취할 의사가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
- vi) 채무상의 권리에 대한 매매, 연쇄판매(referral) 또는 기타 양도가 소비자에게 채무상환에 대한 방어권 또는 청구권의 상실, 본편에 의하여 금지된 관행추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허위표시 또는 암시
- vii) 소비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행한 범죄 기타 행위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암시
- viii) 분쟁채무가 분쟁중임을 연락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허위라고 알려진 또는 알려져야 하는 신용정보를 특정인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연락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ix) 법원, 미합중국 또는 주의 관리나 기관에 의해 허가, 시행 또는 승인된 서류로 가장되거나 허위표시된 서면연락 또는 동 근거, 허가 또는 승인 있음을 오인할 수 있도록 조성된 서면연락의 사용 또는 배포
- x) 채무의 추심이나 추심의 시도 또는 소비자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허위 표시 또는 기만수단의 사용
- xi) 서면에 의한 소비자와 최초 연락 내용 또는 그 이후의 연락 내용⁵¹⁾의 불명시
- xii) 가격에 대해 정당한 구매자에게 거래의 계산이 인계된다는 허위표시 또는 암시
- xiii) 법적 절차를 수행중이라는 서류상 허위표시 또는 암시
- xiv) 실제의 기업,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이외의 다른 기업,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사용
- xv) 법적 절차 형식이 아니거나 소비자에 의한 소송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서류상 허위표시 또는 암시
- xvi) 채무회수업자가 경영하고 있거나 본법의 제603조 (f)항에 의해 정의된 소비자보호기관에 고용되고 있다는 허위표시 또는 암시

51) 최초 연락 이후의 연락 내용의 명시에는 그 연락 내용이 법적절차상 정식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만약 그 최초의 연락 내용이 구두로 행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채무회수업자가 채무를 추심하였거나 그와 동일한 목적의 어떤 정보를 획득하였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5) 불공정한 행위(제808조)

채무회수업자는 채무회수 또는 회수시도를 위하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있다.

- i)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한 금액(원본채무에 종속된 이자, 요금, 수수료, 비용을 포함)의 추심
- ii) 채무회수업자가 5일 이상이 경과한 수표 등 지급수단을 특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다만 관계인이 동 수표 또는 수단에 대하여 예치하겠다는 의사를 예치전 3이상 10일 이내의 영업일에 서면으로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ii) 채무회수업자에 의한 형사소추의 협박 또는 제기의 목적을 위한 기일 경과수표나 기타 기일경과 지급수단의 청구
- iv) 수표 등 지급수단의 표면상 기일이전 예치 또는 기일경과된 수표 등 지급수단에 대한 예치의 협박
- v) 진실한 연락목적의 은폐에 의하여 특정인의 연락요금의 추가발생(동요금은 전화료 및 전신료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vi) 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무력화를 초래시키기 위하여 취한 비사법적 조치 또는 동 조치의 협박
- vii) 우편엽서에 의한 소비자와의 채무관련 연락
- viii) 우편이나 전보의 사용에 의하여 소비자와 연락하는 경우 봉투표면에 채무회수업자의 주소 이외에 다른 언어나 부호의 사용(다만, 채무회수업자가 채권회수기업임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기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기만적인 서식제공

해당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신용업자 이외의 자가 실제로 채권추심에 참여하지 아니함에도 소비자가 신용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회수 또는 회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일상 사용서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서식을 도안, 작성 및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812조 a).

이에 위반한 자는 채무회수업자가 제8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과 같은 범위 및 종류의 책임을 부담한다.

(7) 손해배상

동법 제813조에 의하면,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본조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본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무회수업자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관계인에게 부담할 책임이 있다.

- i) 동 규정의 위반 결과 관계인이 입게 되는 실제 손해액
- ii) 개별소송의 경우 1,0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손해액을 동 관계인에게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a)각 원고명의로 (i)에 의거 보상될 수 있는 금액, b)500,000불 또는 채무회수업자의 순자산의 1%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집단소송의 모든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최저보상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의 책임에 대한 강제이행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법원이 결정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은 법규를 위반한 채무회수업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본조에 의거한 소송이 악의적(in bad faith)이고 해약의 목적으로 제기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피고가 동 행위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위와 언급한 소송과 관련한 책임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위의 개별소송에 있어서 채무회수업자의 불준수 빈도수 및 지속성, 동 불준수의 내용 및 동 불준수의 고의성 정도, ②집단소송에 있어서 채무회수업자의 불준수 빈도수

및 지속성, 동 불준수의 내용,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및 채무 회수업자의 고의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회수업자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고 동 과오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채택한 절차의 견지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과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우세의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편에 의거 제기된 소송에 있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선의(good faith)로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과하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후 동 의견이 변경, 취소 또는 사법 기타 관청에 의하여 무효로 결정된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일본

일본은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부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 채권관리회수업에관한특별조치법

1) 업무에 관한 규제

채권회수회사 및 그 종사자에 요구되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신분 제시의무: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는 해당 채권회수회사의 상호, 자기이름 기타 범무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그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제17조 2항).
- ii) 폭력조직원등의 사용금지: 채권회수회사는 폭력조직원 등을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그 업무의 보조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8조 1항).
- iii) 허위·오인 표시 금지: 채권회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해서 광고를 할 때는 채권회수의 확실성 기타 범무성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현저하게 사실과 상위하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시키는 것 같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동조 2항).

iv) 포괄적 위임장 취득 금지: 채권회수회사는 채권관리회수업에 관계되는 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공증인에게 촉탁하는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취득할 경우 해당 채권의 채권금액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위임장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동조 3항).

2) 행위의 제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i) 협박·곤혹행위: 등의 채권회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그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것 같은 언동으로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제17조 제1항).
- ii)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 사용: 채권회수회사는 특정금전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4항).
- iii) 과잉 이자·배상액의 이행요구: 채권회수회사는 특정금전채권에 관계되는 채무로 이자제한법(1954년 법률 제100호)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 제한액을 초과하는 이자(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자로 보이는 금전을 포함)의 지불을 수반하거나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한 배상액의 예정이 동법 제4조에서 정한 제한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 등에게 그 이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5항).
- iv) 변제자금 조달 요구: 채권회수회사는 채무자 등에게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금전의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특정금전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6항).

- v) 채무인수 요구: 채권회수회사는 채무자 등의 친족(채무자 등과 내연관계가 있는 자 기타 채무자 등과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채무자 등이 고용하는 자 기타 채무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 채무자 등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7항).
- vi) 방문 또는 전화의 제한: 채권회수회사는 채무자 등이 특정금전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처리를 변호사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판소에 민사사건에 관한 수속을 취한 뜻의 통지를 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해서 해당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동조 8항).
- vii) 기타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 채권회수회사는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 등의 보호에 부족하거나 또는 채권의 관리 혹은 회수의 적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범무성령으로 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동조 9항).

(2)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이 법에서는 대금업자의 준수 의무와 함께 추심행위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협박·곤혹행위 행위

대금업을 영업하는 자 또는 대금업을 영업하는 자의 대부 계약에 기한 채권의 추심에 서, 대금업을 영업하는 자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함에 있어 타인을 협박하거나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언동⁵²⁾ 기타 타인의 사생활 또는 영업의 평온을 해하는 듯한 언동⁵³⁾에 의해, 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된다(제21조

52)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2003년 8월에 발표한 통일소비자신용법요강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협박 또는 곤혹스러운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즉 ①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②고성을 지르거나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③다수인이 우르르 몰려가는 행위, ④협박 또는 곤혹스러운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송달하는 행위, ⑤ 상기 ① 내지 ④에 열거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을 초래케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동 요강안 제7조제1항 ① 내지 ⑤호).

53) 변호사연합회의 요강안 중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언행』의 예시는 다

제1항)고 규정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조의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i)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시간대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시간대에, 채무자 등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팩스 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또는 채무자 등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
- ii)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채무자 등의 근무처 기타 자택 이외의 장소에 전화를 걸거나 팩스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또는 채무자 등의 근무처 기타 자택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
- iii) 포스터, 입간판 기타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가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대출에 관한 사실 기타 채무자 등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채무자 등 이외의 자에게 밝히는 것
- iv) 채무자 등에 대해 다른 대금업을 하는 자로부터의 금전대출 기타 이에 유사한 방법에 의해 대부계약에 기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함부로 요구하는 것
- v) 채무자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 등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함부로 요구하는 것,
- vi) 채무자 등이 대부계약에 기한 채권에 관한 채무의 처리를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 또는 사법서사(법무사) 또는 사법서사법인에 위탁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판소에서의 민사사건에 관한 수속을 취하여, 변호사 등 또는 재판소로부터 서면으로 그러한 취지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정당한 이용 없이 채무자 등에 대해 전화

음과 같다. ①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그 시간 외에도 채무자 등이 병기요양, 관혼상제, 재해 기타 채권추심에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전화(FAX, 전자메일 포함, 이하 동일하다)를 하거나, 전보를 송달하거나 또는 방문을 하는 행위, ②반복 또는 계속하여,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송달하거나 방문을 하는 행위, ③벽보 부착, 낙서, 통신 기타 방법으로 채무자의 소비자 신용거래에 관한 사실, 기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④근무지(勤務先) 이외의 연락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송달하거나 또는 방문을 하는 행위, ⑤근무지 이외의 연락방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지에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송달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채무자 등을 곤혹케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동요강안 제7조제2항 ①호 내지 ⑤호).

를 걸거나, 전보를 송달하거나, 또는 팩스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방문하는 방법에 의해 해당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채무자 등으로부터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다시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3. 영 국

영국은 소비자신용법, 공정거래청의 채무회수에 관한 가이드라인(Debt Collection Guidance)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은 구체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채무회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육체적·정신적 해악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가혹행위라고 여겨지는 압박을 가하는 다음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 i) 불합리한 때 또는 불합리하게 재촉하여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ii) 채무자에게 재산을 매도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 iii) 하나 이상의 채무추심거래를 이용하여 다른 당사자와 동시에 반복하여 여러 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iv) 이하 반복되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행위
- v) 채무에 대하여 다른 채무추심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행위,
- vi) 불합리할 정도로 거대한 할부금을 전부 이행하라고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 vii) 채무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겠다는 진술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행위
- viii) 채무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무시하는 행위

- ix)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을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x) 채무자를 공공연하게 당황하게 하는 행위 등

(2)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방법

채무자와의 거래는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 아래 불공정한 거래를 예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채무자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채무변제요구
- ii) 채무자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한 채무내용의 폭로
- iii) 지정된 자 내지 권한있는 제3자와의 거래의 거절행위
- iv) 이유없이 채무관리회사와 협의를 거절하는 행위
- v) 채무자와 사전협의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관리회사에 채무내용을 이전하는 행위
- vi) 지급기일 내에 받은 지급금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재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지체의 상황을 초래한 경우
- vii) 채무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케 하는 행위
- viii)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등을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 ix) 채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회수행위를 계속하는 행위 등⁵⁴⁾

(3) 채무회수방문

채무회수를 위한 방문의 경우에도 채무자를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협박에 의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한 행위는

54) 그 밖에 불공정행위로 i)채무자와 직접 계약의 체결을 주장하고 지정된 대리인 등과의 계약체결을 회피하는 행위, ii)할부에 의한 합리적인 지급방법의 제공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들고 있으나, 불법채권추심행위와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과 같다.

- i) 방문목적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행위
- ii) 채무자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 iii) 채무자가 명백히 어려워졌을 때 계속하여 방문하는 행위
- iv)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한 부적절한 무단 방문
- v) 채무자의 퇴거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행위
- vi) 채무가 교착상태에 빠졌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사전 예약도 없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vii) 방문 기일이나 시간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는 행위
- viii) 직장이나 병원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서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4) 기타 불공정한 채무회수방법

그 밖에 불공정한 채무회수방법으로는 ① 만약 채무자가 적절한 기한 내에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회수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그 채무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70의 제40조에서의 규정하는 ‘해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채무지급에 대한 압박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제 5 절 문제점

1. 계약 체결단계

현행 민법상 채권계약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기타 금전채권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담보의 제공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나 채무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확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전혀 우려할 바가 사실상 없다. 담보물권의 우선변제력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적 담보에 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 내지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에 의존하게 된다.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즉, 무자력의 상태가 발생하면 채권의 회수는 어렵게 된다.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나 인적 담보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책임재산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기 때문에 채무자측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으로써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관련 자료로서 재산목록이나 수입원의 증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정 의무로 된 경우는 없다. 거래의 관행상 재직증명서나 종합소득세의 납입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내지 건축물대장 등의 재산에 관한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채권자의 개인적 정보 수집에 의하거나, 일반적인 신용의 평판이나 그 동안의 거래실적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현행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조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정도나 이행기에 있어서의 변제자력에 관한 조사나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담보대출의 관행을 지속시켜 왔고, 무담보 신용대출이나 인적 담보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 채권회수상의 많은 불법 내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신용정보업법은 채권추심을 위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이행기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간에 급증한 신용카드에 의한 금전채무가 인적 담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아울러 채무자의 책임재산 내지 변제자력에 대한

조사·평가를 생략한 채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신용정보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신용정보의 제공자·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즉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조회 및 제공이 종합적으로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법이 적용되는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및 변제자력에 관한 조사가 제도화되어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신용대출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채무자의 동의없이 당해 상거래로 인한 계약체결단계에서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서는 제도적 문제는 없다.

이상과 같이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과 민사 금전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내지 변제자력의 조사 및 판단에 있어서 전자는 채무자의 협조없이 가능하게 된 데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협조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업법에 의한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민사 일반 채권계약에 불법적으로 이용될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후의 개인적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에 의한 불법추심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이행기 이전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이 채권추심의 직전단계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된다. 채권보전을 위한 제도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민법상 유일하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관계가 없게 된다. 반면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반드시 이행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

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그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惡意가 요건이지만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善意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권자의 부담이 없지만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제2항)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사해행위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로서의 무자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무자력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무자력의 판단은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부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고, 무자력의 판단시기는 각각의 사해행위 당시 및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상태·처분행위의 대가·처분행위의 상대방 등을 알지 못하고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할 경우에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과 관계가 된다.

기한의 이익은 무상의 임치처럼 채권자를 위하는 경우나 무이자 소비대차처럼 채무자를 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한은 채무자에게 유예를 주는 취지에서 붙이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은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153조제1항). 그러나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⁵⁵⁾ 기한의 이익은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없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의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55) 이영준, 민법총칙, p.74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i)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제1호), ii)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제2호), iii)채무자가 파산한 때이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그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이 막연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며, 또 법률관계를 부당하게 혼란시키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⁵⁶⁾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자의 자력악화를 기한의 이익이 상실사유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구체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이행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담보제공의 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담보제공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이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담보제공의 의무는 특약·법률의 규정 등으로 발생하나, 그 어느 경우임을 묻지 아니하며,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에 채권자가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려 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곧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는 때부터 채무자의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⁵⁷⁾

56) 김주수, 민법개론, p.163.

57) 광윤직, 전계 채권총론, p.126.

3. 이행기 이후 단계

(1) 민사채권의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권의 만족은 채무자의 이행 또는 강제이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금전채권은 그 특성상 채무불능이나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오로지 이행지체의 문제만 발생한다.

물적 담보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비록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담보물권의 우선변제력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담보물권의 실행 이전에 채권자가 행하는 채권추심행위는 여전히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민법은 민사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반조항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채권자 등 채권추심인이 폭행·협박·위계나 위력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요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행지체 중인 금전채무의 이행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즉 폭리행위로는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폭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불공정한 행위로서 채권추심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나, 현행 민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은 민사채권의 추심행위에 관하여 특별히 불공정한 행위로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보증인의 최고·검색항변권의 요건으로 필요한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음 및 집행이 용이함’의 증명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즉, 책임재산 및 수입원에 대한 신용정보가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혀 제도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증인의 최고·검색항변권의 행사를 실효성없게 하거나, 변제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전가시키는 불공정의 문제가 있게 된다.

(2)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의 경우

신용정보법 및 대부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현실의 다양한 불법추심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한계이다. 기술한 바처럼 미국이나 영국 및 일본의 경우처럼 상세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예시가 없는 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나 채무자측의 권익보호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금지사항으로 i)신용정보의 조사·수집과 관련한 행위(제26조 제1호내지제6호), ii)신용평가 관련행위(제8호) 및 iii)불법채권추심행위(제7호 가목 내지 라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신용정보의 누설·제공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유형도 신용정보업법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아니하다. 가장 상세하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이라 할 수 있다. 동 감독규정 제24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비교적 영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형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법령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신용정보업법은 소재지 정보의 취득, 채무회수와 관련된 연락, 해약 또는 권한의 남용, 허위 또는 오도된 표시 기타 불공정한 회수수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무자측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항변 등을 통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채권자 내지 채권추심인의 불법 내지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구체적 기준 내지 행위준칙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강제이행 단계

법원에 의한 강제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측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강제이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파악 및 보전과 관련하여 ‘재산목록명시제도’나 ‘채권자대위권’이 있다. 재산목록명시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 공동담보로 집행할 수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법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강제이행이 예상되는 시점 이후에 채무자가 행한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은 형벌에 의한 범죄예방적 효과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에 간접적 효과는 인정된다.

강제이행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담보물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변제자력상태에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므로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이행지체 단계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혀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강제이행으로써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인적 담보에 의한 금전채권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의 책임재산 정도에 의존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급여의 압류 및 전부명령, 연대보증인의 무한책임 등도 채무자의 생존권적 차원의 배려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 5 장 법제 개선방안

제 1 절 개선방향

1. 민사채권의 추심 부문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사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부문이므로 소비자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내지 제도적 불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재산의 정도 및 현황에 대하여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관계 내지 교류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판단하고 있고, 채권의 추심에 있어서도 개인적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정도까지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물론 개인적 인간관계의 훼손 내지 인간적 배신이라는 정서적 문제가 없지 않지만, 상사채권의 경우처럼 개인적 관계 내지 채무자의 형편을 인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이 채권추심을 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현재의 제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나머지 악의적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이나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재산목록제시명령제도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상사채권분야에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적 신용에 의한 무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당하다. 문제는 사회공동체가 계속 분화됨에 따라 개인적 신용상태의 확인이나 신뢰관계에 의한 적정한 채무이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이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민사 금전채권의 채권추심 경우에 한정하여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더 확대하여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면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상의 특약조항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신

용상태가 불량하여 무자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상사채권의 추심 부문

상거래에 의한 금전채권 회수 내지 추심에 있어서는, 담보물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과, 인적 담보에 의한 금전채권 기타 신용대출에 의한 금전채권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채권회수의 실효성 확보 측면과 소비자로서의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각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담보물권의 행사 이전 단계에서 일반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나 인적 담보에 의한 금전채권의 추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도에서는 채권추심행위의 공통적 사항으로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 담보에 의한 금전채권이나 신용대출에 의한 금전채권의 경우가 가장 많은 채권추심상의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는 소비자로서의 채무자 보호측면에서 보다 상세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2 절 관련법제 개선방안

1. 신용정보업법

(1) 민사 금전채권의 신용정보 이용 확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에 관한 동법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민사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담보요구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신용을 근거로 한 금전 소비대차가 적정하게 체결,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채권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 대상자도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 및 법정대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시안
<p>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u>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u>신용불량자에</u>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u></p> <p>2. (생략)</p>	<p>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u>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u>자에</u>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u></p> <p>2. (현행과 같음)</p>

(2) 추심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제1항).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에 의한 피해는 채무자인 신용정보주체뿐만 아니라 법정대위자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배우자 가족 및 친족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신적 피해 등은 상당한 것이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⁵⁸⁾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58) 김성천, 전계서, p.36.

제5장 법제 개선방안

손해배상책임을 채권추심의 경우와 신용정보의 조사·평가의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확대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개정시안
<p>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 ②(생략)</p>	<p>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현행과 같음)</p> <p>②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현행 제26조의 규정을 각각 신용조사에 관한 규제사항과 신용평가에 관한 규제사항 및 채권추심에 관한 규제사항으로 조항을 달리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소한 채권추심에 관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할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제26조의2(불법채권추심행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제26조의2(불법채권추심행위) 신용정보업자등은 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현행과 같음)
2. 채무자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것 같은 언동으로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신설)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4. 채무자 등에게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금전의 차입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 특정금전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신설)
5. 채무자 등의 친족(채무자 등과 내연관계가 있는 자 기타 채무자 등과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채무자 등이 고용하는 자 기타 채무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 채무자 등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신설).
6. 채무자 등이 특정금전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처리를 변호사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법원에 민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취한 뜻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해서 해당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신설).
7. 기타 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 등의 보호에 부족하거나 또는 채권의 관리 혹은 회수의 적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신설).

※ 참고안

이 방안은 연락 및 방문에 관한 사항, 채권추심 불법적 수단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다.

제26조의2(채권추심을 위한 연락)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채무자의 직접적인 사전 동의 또는 해당관할 법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연락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정상적인 시간이나 장소 또는 소비자에게 불편하다고 알려지거나 알려져야만 하는 시간이나 장소
2.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을 채무회수업자가 알고 있고 또한 동 변호사의 성명 또는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갖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변호사가 신용정보업자등과의 연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호사가 채무자와의 직접 연락을 동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3. 채무자의 근무장소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 동의나 해당 관할법원의 명시적 허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회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은 채무자, 채무자의 변호사,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된 경우의 소비자보고기관, 신용업자, 신용업자의 변호사 또는 신용업자등의 변호사 이외의 제3자와 연락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관련

(1)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

최근 법무부는 채무자의 재산조회제도를 개선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압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은 판결로만 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구제를 곤란하게 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급료 등의 액수가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며, 급료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골자

- 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명의로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 나. 현재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되도록 하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46조제1항제4호단서)
- 다.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195조제3호, 제246조제1항제4호)
- 라. 현재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는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나, 앞으로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1조이하)

(2) 법안의 검토 및 보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재산명시절차의 보완에 관한 사항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를 통하여 채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생존권적 배려를 꾀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 추가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을 위한 압류 대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만큼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존적 배려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대부법 관련

신용정보업법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자가 직접 채권자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도 신용정보업법 개정시안 제26조의2와 같은 내용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대부업법에도 보완하여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한국문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 김성천,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M & b, 2003.
- 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 김성천, 『채권추심행위와 법제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 김용한, 『재산법의 과제와 판례』, 박영사, 1989.
-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0.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법문사, 2002.
- 김홍규, 『민사소송법』 제4판, 삼영사, 2003.
- 대한상공회의소, 『전자거래관련법의 개정방향연구』, 2001.
- 법무부, 『법과 생활』, 2004.
- 안현숙,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협박성 ‘독촉장’ 실체”, 『소비자시대』 2000년 10월호.
- 윤완중, 『알기쉬운 민사집행과 채권관리』, 한국금융연수원, 2003.

참 고 문 헌

- 이기현, “협박·폭력 등 채권자의 불법채무회수행위가 판치고 있다”, 『소비자시대』 1998년 10월호.
- 이승우, “채권추심업의 문제점과 입법제안” 『채권추심법 및 신용정보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7.15.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0.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0.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보정, 법문사, 2003.
- 한국소비자보호원, 『채무자의 가정부채 회수상의 문제점과 대책 - 강압·폭행 등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중심으로』, 1998.8.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업무자료 금업 - 28, 1989.11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업무자료 금개 - 3, 1991.11.
-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1.

[외국문헌]

- Brian Bix, Contract Law, Vol. I . II, 2000.
- Hobbs, Robert J., Fair Debt Collection, fifth Edition,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2004.
- Kagan, Robert A., The Routinization of Debt Collection : An Essay on Social Change and Conflict in the Courts, Law and Society Review 18(1984).

Office of Fair Trading, Debt collection guidance : Response to consultation paper and final guidance on unfair business practice, of1664, 2003.7.

Rheinatein, Struktur vertraglichen Schuldverhältnisses, 2000.

The Law Reform Commission of Hong Kong, The Regulation of Debt Collection Practices, 2002.7.

荒木新五^외, 債權管理, 商事法務研究會, 2000.

長尾治助, 消費者私法の原理, 有斐閣, 1992.

長尾治助, 消費者保護法の理論, 信由社, 1992.

田高寛貴, 擔保法體系の新たな展開, 勁草書房, 1996.

安井宏, 法律行爲・約款論の現代的展開, 法律文化社, 1996

森村進, 財産權の理論, 弘文堂, 1998.

戸田知行, 信賴責任の原理, 2004.